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제 회)	

안보침해범죄및활동등에관한 대응업무규정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형법」중 내란·외환죄, 「군형법」중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함. ‘12.3 계엄’을 계기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관련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에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장이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해 유관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 요청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案 제7조 제3항 단서)

나.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한 대응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장이 필요한 경우 군사기지 등 시설에 직원의 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案 제7조 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339885호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유관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호다목 중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 단서의 정보에 관한 대응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관할부대장, 관리부대장(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 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협조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③ 국가정보원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를 상호 간에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다.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③ ----- ----- <u>.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유관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호다목 중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u> ④ <u>국가정보원장은 제3항 단서의 정보에 관한 대응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관할 부대장, 관리부대장(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 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협조해야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정보원	
연락처	(02) 2210 - 8083